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2473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28,73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28,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F는 D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5. 'D는 F에게 3,325,897원 및 그 중 1,015,8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3.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F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2021. 10. 5.경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한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5.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D, H, 피고가 있었으며, D의 상속지분은 1/3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5. 27.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6491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D의 무자력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의정부시장,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9. 5.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6호증은 D가 아닌 피고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에 불과할 뿐 달리 D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13,800,000원(= 341,400,000원 × 1/3) 상당에 이르고, 2022. 7. 8.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328,7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적은 금액인 위 4,328,738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328,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진섭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의정부시
대 115㎡

2. 경기도 의정부시
위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3.96㎡
2층 63.96㎡
지하실 63.96㎡

끝.

